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3
----------	-----

2014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20일, 장우윤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 수정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우윤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라는 명칭을 ‘교육공무직원’ 으로 변경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비정규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 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명칭변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의 소속감과 사기를 높임으로써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명칭변경을 통해 행·재정적 비용 등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정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만 비정규직원의 명칭은 서울시교육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써 가능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원의 명칭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계류 중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시·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원 명칭 현황

(2014.10말 현재)

시·도교육청	명칭
서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구	무기계약근로자
인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광주	교육공무직원
대전	교육공무직원
세종	교육공무직원
울산	교육공무직
경기	교육실무직원
강원	교육공무직
충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충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전북	비정규직 근로자
전남	비정규직 근로자
경북	교육실무직원
경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제주	교육공무직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제1항의 용어를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3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1항의 용어를 수정함

##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u>교육공무직원의</u>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u>교육공무직원의</u>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공무직원</u>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및 제1조부터 제9조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를 “교육공무직원”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한” 을 “이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청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 채용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략)</p> <p>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u>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4. “관리부서”란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p> <p>5. “운영부서”란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청 <u>교육공무직원</u> 채용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u>교육공무직원</u>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공무직원</u>”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p> <p>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u>교육공무직원과</u>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4. “관리부서”란 <u>교육공무직원</u>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p> <p>5. “운영부서”란 <u>교육공무직원</u>의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u>교육공무직원</u>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니한다.

1. ~ 3. (생략)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부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되 관리부서와의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p>제8조(채용) ① <u>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는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교육감은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보 등) 교육감은 <u>공무원이 아닌 근로자</u>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채용) ① <u>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u>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u>교육공무직원</u>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교육감은 <u>교육공무직원</u>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보 등) 교육감은 <u>교육공무직원</u>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p>
---	---